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환 경 정 책 과

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구 미 시

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3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충전인프라 부족과 장시간 충전 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구축하고자 함

나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

다. 금오산제1주차장 등 11개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에 충전시설 설치하고자 함

라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3제2항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*을 축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* **영구시설물** :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(주차장, 수소충전소 등)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 업 명 :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사업

2) 기　　간 : 2026. 1. ~ 12.

3) 설치대상지 : 금오산제1주차장 등 11개소

※ 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등 7개 부서와 협의 완료

4) 주요시설 : 전기차 충전기 39기

나. 운영방법

1)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

- 운영주체 : 민간 충전사업자
- 사업비 : 국비 50% 민간 50%
- 운영기간 :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5년(1년단위 연장 최대 5년)
- 운영범위 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
2)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

- 운영주체 : 기후에너지환경부
- 사 업 비 : 국비 100%
- 운영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(1년단위 연장)
- 운영범위 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
다. 전기충전기 설치계획

1) 설치장소 : 설치시설 11개소

2) 설치충전기 : 39기(급속18 완속21)

라. 향후 추진계획

1) 2026. 1. : 각 부서 수요조사

2) 2026. 6. :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신청

3) 2026. 7. :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

4) 2026. 8. : 공사착수

5) 2026. 11. : 2027년 기후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 신청

6) 2026. 12. : 공사 준공 및 사용개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대상지

연번	구 분	총주차면 수	수 량		담당부서	주 소	비고
			급속	완속			
총계	**11개소**		**18**	**21**			
1	금오산제1주차장	76	0	2	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	남통동 280-1	신설
2	금오산제2주차장	205	1	3	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	남통동 274-2	신설
3	금오산제3주차장	128	1	2	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	남통동 268	신설
4	금오산 대주차장	789	2	2	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	금오산로 218	증설
5	금오산 야영장 주차장	207	0	2	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	남통동 344-1	증설
6	시민운동장	1,214	4	2	체육진흥과	박정희로 375-22	증설
7	청년·소상공인 상생센터	89	2	4	건축디자인과	원평동 112-1	신설
8	새마을운동테마공원	254	6	0	새마을과	박정희로 155	신설
9	구미영상미디어센터 주차장	22	1	0	문화예술과	산책길 75	증설
10	임오동행정복지센터	11	1	0	임오동	임은길 61	신설
11	공단동 노외주차장	184	0	4	기업지원과	공단동 352-33	신설

관계법령

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**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
2 생략
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
4 생략, ② ~ ⑩ 생략

⑪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**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·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**하고,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⑫ 생략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**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**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**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**

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~ ⑤ 생략

□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충전시설의 설치・운영에 대한 지원)

① 생략

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・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,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·수익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・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・확

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.

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환경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손 양 숙
	팀 장	박 민 아
	담 당 자	원 응 재 (480-5255)